

2026년 상반기분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공고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힘든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상반기분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통 영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상반기분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2. 지원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받은 경우로써

2026년 상반기(2026. 1. 1. ~ 6. 30.)에 발생한 대출 이자

나.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

※ 2026년 하반기분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2027년 3월(예정)

3. 지원대상: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에서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고일 현재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공고일 현재 통영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서 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2026. 9. 2.)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대학 제적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자 지원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함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2026년 8월 하계 졸업생은 **재학생**에 준하여 지원

※ 국가, 타 지자체, 기업체 등과 **중복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9. 2.(수) ~ 9. 23.(수) 17:00

나. 신청방법: 전자 우편, 방문, 등기우편 접수(팩스 불가)

1) 전자 우편 접수처: wngus9510@korea.kr

2) 방문 및 우편 접수처: 통영시 무전 3길 29(무전동, 통영시립도서관 4층)
통영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2026. 9. 23.(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 2026. 9. 2.(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공통 서류	
1. 신청서 2. 학생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5년 포함)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조회 동의서	
①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이면서 대학(원) 재(휴)학생	②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이면서 대학(원) 졸업(수료)생
1.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2.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1.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 2.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학생 본인의 주소지가 1년 이상 통영시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서류로 학생 본인 초본을 갈음함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5년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3. 직계 존속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③ 통영시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	④ 통영시 소재 대학(원) 졸업(수료)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1.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유의 및 안내 사항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민원여기요-개인민원-자격득실확인서

2)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 또는 가려서 제출

4) 2026년 8월 하계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증명서 제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불요)

5) 휴학생의 경우, 휴학 일자가 표기된 증명서 제출

6) 개명하였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개인 인적 사항 포함하여
발급·제출 및 신청서에 개명 사실 표기

5. 지원시기: 2026년 12월 예정(변동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6. 지원방법: 이자 지원 확정 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상환 계좌로 입금

7. 기타 유의사항

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 개인 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라며, 착오·허위 기재 및 제출 서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됩니다.

다. 기타 문의는 통영시 평생교육과 교육지원팀(☎055-650-2615),
(재)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외 대상은?

: 대학(원) 제적한 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10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학생, 국가 및 타 지자체·기업체 등 중복지원자, 해외 대학 재학생 및 외국 국적자

2. 이자 지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이자 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상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1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생인 경우에는 이자가 모두 쌓여있으므로 이자부터 먼저 상환되고 이자금액이 모두 상환되면 원금이 상환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생인 경우에는 월마다 이자를 학생이 상환하고 있으므로 일 단위로 계산한 이자 지원금이 대출 원금에서 상환됩니다.

※ 학자금 이자 지원액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크 → 학자금 대출 상환 → 대출내역 → 대출 계좌번호(16자리) 클릭

* 대출 내역 비고란(우측)에 "지자체 이자 지원"으로 표시되어 있음

3. 2015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직 갚지 못했으며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지원 가능하나요?

: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13년 8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3년 2학기부터 2026년 1학기까지 기간 중 실행한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2026.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므로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 및 제3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명시

4. 주민등록 요건의 기준 일자是什么时候?

: 지원 신청 공고일(2026. 9. 2.) 기준, 본인의 경우 1년 이상(2025. 9. 2. 이전) 또는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2023. 9. 2. 이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등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나요?

: 네, 반드시 본인이 동의서에 동의 여부에 체크하고 서명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에 직계존속의 개인정보동의서(학생 직계존속용)도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인(예: 부모, 형제 등)이 작성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6.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등본’ 을 제출해도 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최근 5년)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과 ‘주민등록등본’ 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본인은 1년 이상 또는 직계존속 3년 이상 통영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7. 본인은 통영시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부모님 등) 거주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 과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주 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 인 경우 신청자나 존속 둘 다 가능
- 거주 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님’ 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